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벌만능의 늪에 빠진 건설분야 법·제도

# ‘사전예방’ 제도적 장치 없이 중복·과잉 제재로 ‘사형선고’

건설분야 법·제도가 처벌지상주의로 빠져들고 있다.

입찰담합, 산업재해, 하도급법 위반 등에 대한 처벌 강화는 물론이고 심지어 예비타당성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에도 철퇴를 내리는 방안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 때문에 가뜩이나 코너에 몰린 건설업의 경쟁력을 더욱 갉아먹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관련기사 3면

28일 업계에 따르면 사후 처벌 중심의 건설분야 법·제도 개정 작업이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먼저 입찰담합으로 적발될 경우 건설업 등록 말소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건설사들을 압박하고 있다.

기간 제한 없이 3회 이상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으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건설업 등록 말소는 건설사에는 사형 선고나 다름 없는 만큼 국내는 물론 해외 건설시장에서 건

입찰담합·산재·하도급 위반 등록 말소·거액 벌금 등 ‘철퇴’ 예타 수요예측 부실까지 처벌

설사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규제 로 작용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고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추진되는 것도 큰 부담이다.

개정안은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아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법인에 대해선 연매출액의 5%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영업이익을 내기도 힘든 마당에 연매출액의 5% 수준의 벌금에 처할 경우 일부 건설사는 문을 닫아야 할 처지에 놓일 수 있다.

하도급법을 위반한 원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조사

의무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하도급법 개정이 검토되고 있는 것도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입찰담합, 산재 사고, 하도급법 위반 등은 차치하더라도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수요예측을 부실하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은 심각한 논란거리다.

경제성 이외에 정책성 등을 평가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분석방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다 대규모 SOC(사회기반시설) 추진의 발목을 잡아 되레 사회적 비용 낭비를 초래하는 개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건설업 등록 말소와 징역, 벌금, 과징금 등의 처벌 강화는 정책 전문가가 아니라더라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조치”라며 “처벌보다는 예상 가능한 문제들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 입찰참가제한 땀 협력사·연관산업도 '치명상'

하도급법 위반 땀 '2중 처벌'  
담합 제재 '5중 고통' 뒤따라  
사실상 '고사 위기'로 내몰려  
해외시장 경쟁력에도 악영향  
"다수의 법률제지 일원화돼야"

중복·과잉 처벌 위주의 법·제도가 건설사의 위협 요인으로 부상한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건설사는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해 적게는 이중, 많게는 5중 처벌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실제 하도급법을 위반하면 1년 이내의 영업정지와 2년 이내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등을 받고 입찰담합으로 적발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은 물론 과징금, 손해배상 책임, 형사 처벌, 등록 말소 등의 처벌이 뒤따른다.

특히 공공건설 시장에서 건설사의 수주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은 사실상 건설사의 문을 닫으라는 얘기와 마찬가지다.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은 건설업의 하체 부분에 해당하는 중소건설사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친다.

전체 공공건설시장의 매출액 가운데 상위 150대 이하 중소건설사의 비중이 절반을 웃도는 상황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

은 이들 건설사를 고사 위기에 빠뜨리게 된다.

입찰참가자격제한은 건설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건설업의 특성상 건설사들은 전·후방 연관산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입찰참가자격제한으로 건설사의 일감이 끊기게 되면 건설은 물론 연관산업 근로자들은 길거리로 나왔을 수밖에 없다.

이렇다보니 건설사들은 처벌에 대해 불복·가처분 소송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게 되고 입찰참가자격제한이라는 강력한 제재가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전에 특별사면과 같은 행정제재처분해제 등을 통해 처벌에서 벗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건설사에 대한 행정제재처분해제 특별조치는 지난 2000년, 2006년, 2012년, 2015년에 걸쳐 4번이나 이뤄졌다.

입찰참가자격제한은 해외건설시장에서도 치명적인 악재로 받아들여진다.

입찰참가자격제한에 따라 대외 신인도가 하락하고 이로 인해 해외건설시장 진출에도 빨간불이 켜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같은 중복·과잉 처벌을 담은 법·제도가 건설사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면서 관련 법·제도의 처벌 수준을 크게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하나의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같은 사유로 인한 국가계약법상 입찰참가자

격제한 처분을 면제하는 등 성격이 같은 행정제재 처분은 한 번만 부과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또 국가계약법, 형법 등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내려지는 다수의 법률 제재를 건설법 등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입찰참가자격제한과 관련해선 그 범위를 해당 발주기관에 한정하고 나머지 발주기관에 대해선 입찰참가를 허용하는 방향

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게 시장의 공통된 시각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지금도 중복·과잉 처벌로 인해 건설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낭비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건설사들이 처벌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만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 종합건설업계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상위법 위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례안 제정 공청회

종합건설업계를 중심으로 경기도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제정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업계, 경기도청, 조례안 대표 발의 의원, 건설 전문가가 모여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공청회 토론회는 최종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를 좌장으로 △조준현 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장 △김수철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영지원본부장 △신은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이계삼 경기도 건설본부장이 참석했다.

종합건설업계는 △건설생산체계 기본 원칙 배치 △상위법령 위배 △시설물 안전·품질 확보 곤란 △전문 페이퍼컴퍼니 양산 △발주자 업무증가·예산낭비, 하자 책임 불투명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조준현 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장은 “분리발주는 상위법령인 국가 및 지방계약법상 금지가 원칙이고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례안은 분리발주를 일반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분리발주되면 기계설비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안전관리 방치·예산낭비 등도 우려 건기연·건설노조 등도 반대 목소리

기계설비업계는 “적정 비용 확보로 공사 품질·기술향상 등 기대” 찬성

에서 제외돼 안전관리가 방치상태에 놓인다. 분리발주된 인천 대정초등학교 강당 공사 화재사건 때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결국 발주처가 책임을 졌다”고 말했다.

예산낭비 문제도 제기했다. 조 본부장은 “지난해 전국 분리발주 공사 143건을 조사한 결과, 발주금액의 2%가량인 165억원의 예산이 더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낙찰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정부부처, 4대 공사, 서울메트로 등 공공기관과 노동계, 건설 전문가들이 분리발주를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계설비업계는 경제 민주화를 위한 조례안이라며 찬성하고 나섰다.

김수철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기도회 경영지원본부장은 “국가 및 지방계약법 분리발주 허용 예외 규정이 있으나, 경기도 발주기관에서는 반영되지 않고 있



지난 26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제정 관련 공청회에서 최종한 경기도의회 안운수기자 ays77@

다. 분리발주를 통해 시공 전문성과 적정 공사비 확보로 공사 품질과 기술 향상이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상위법령 기초(분리발주 원칙적 금지)가 유지돼야 한다는 데 무게를 뒀다.

신은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여러 발주기관에 기계설비분리발주에 대한 의견을 들었는데 분리발주를 부담스러워했다. 공정·안전관리, 하자보수에 애로점을 호소했다. 운영·유지보수

까지 통합발주하는 것이 트렌드라고 본다. 제3차 관점에서 볼 때 국가·지방계약법령의 기초를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현장 토론에서 민주노동당 건설노조 관계자는 “분리발주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 기계설비업체가 원정역할을 한다는 것인데,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명확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설물유지관리협회 관계자는 “상위법

은 분리발주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조례안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종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는 “이번 공청회는 조례안에 대해 업계의 의견이 대립함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러협회의 의견과 객관적 입장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의견을 듣고 판단해 심의에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한상준기자 newspla@